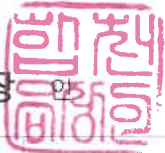
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4일

합천읍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정 *덕	정 *덕 1958-05-27	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11-06